10·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69 발의연월일: 2020. 12. 17.

발 의 자:임오경·김병주·장철민

오기형 • 홍성국 • 오영환

최혜영 • 이용우 • 김남국

신현영 · 정청래 · 장경태

주철현 · 이성만 · 임호선

이수진 • 이원택 • 김민철

한준호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

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5조제 1항).

법률 제 호

10·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0 ·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"개호"를 각각 "간병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의료지원금) ① 10·27법난	제5조(의료지원금) ①
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	
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	
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	
거나 상시 <u>개호</u> 또는 보조장구	<u>간병</u>
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	
는 치료・ <u>개호</u> 및 보조장구의	<u>간병</u>
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	
에 지급한다. 다만, 10·27법난	
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	
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	
자는 제외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